

‘소유문제’라는 리트머스 시험지

* 이 글은 곧 출판될 필자의 논문 “기본소득: 신자유주의적 사회계약?”의 일부를 요약수정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승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들어가며

많은 기본소득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인정하듯이, 기본소득론은 이질적인 정치적 지향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 곳에 담아놓은 그릇과도 같다.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의 다양성은 차치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에서부터 공화주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거쳐 밀튼 프리드먼과 같은 우파 경제학자의 논의까지, 다른 영역이라면 공존하기 힘든 이념들이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함께 묶여 제시되곤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내부의 논쟁은 ‘외부’와의 논쟁에 비해 그다지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질적인 정치적 입장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목적 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 혹은 경로에 가깝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본소득 반대론에 맞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방어하거나 그 정의와 원칙을 정교화하는 것에 집중된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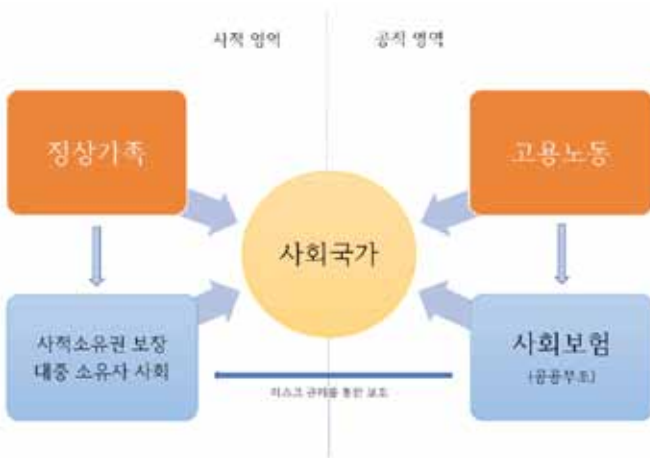
이 글에서 나는 이러한 논의 상황과 관련해

두 가지 주장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소득의 이러한 기묘한 포용성은 ‘신자유주의적 조건(neoliberal condition)’을 수용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는 기본소득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기존의 많은 사회운동들이 복지국가의 쇠퇴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반대의 정치”에 머무른다면(Ferguson 2017), 기본소득은 일정부분 그 변화를 수용하고 그 조건 위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이질적인 정치적 지향들이 투사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둘째, 이렇듯 신자유주의적 조건을 수용하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세련화된 신자유주의 통치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급진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유문제’에 대한 기본소득론의 고민이 좀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효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소유문제는 기본소득론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핵심 쟁점이자 그 사회운동적 성격을 확장하는 주요한 통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포드주의적 사회계약의 배치와 해체

먼저 기본소득이 수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선행하며 이와 대비되는 전후 자본주의의 포드주의적 사회계약 형태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모델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만을 일반화한 것이자,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들을 사상한 추상적 도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론의 특징을 판별하기 위한 발견론적^{heuristic} 시도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부흥기까지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의 사회계약을 도식화하자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포드주의적 사회계약의 배치



이 포드주의적 사회계약 모델은 소위 ‘정상가족’과 ‘고용노동’을 기본적인 두 축으로 삼는다. 사적 영역에서는 가정주부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포드주의적 가족임금을 통해 대중노동자들이 일정한 자산축적과 대량소비에 기반해 중산층 소유자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공적 영역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교환된 조직 고용노동을 통해 사회보험에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안정된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이었다(Harvey 1994). 이 때 사회보험은 보험통계에 기반해 표준적인 삶의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들(실업, 산업재해, 은퇴 등)을 계산·관리해주고, 좀 더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인 공공부조는 이러한 정상가족과 고용노동이라는 출입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보조적인 차원에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 가지 축의 구성과 재생산을 관리하고 사회보험의 운영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최종 보증자”의 역할은 당시 완성되어 가던 ‘사회국가^{social state}’가 담당하게 된다(Ewald 2020).

지난 수십 년 간의 신자유주의 경험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심지어 좌파들조차도) 이러한 포드주의적 사회계약을 마치 노스탤지어의 대상이자 이상향처럼 바라보도록 만들었지만, 종종 잊혀지곤 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이러한 사회계약은 당시 실재하던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응한 계급타협의 산물이었다(Offe 1982). 포드주의적 사회계약은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운동에 맞서, 사적소유의 원리 자체는 보호하되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과 부작용—불평등, 노동소외, 시장지배 등—을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려는 성격을 가진다. 둘째, 사회보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정상가족과 고용노동이 가진 억압적 성격을 간과해선 안된다(Fraser 2014). 가부장적인 성별분업과 이성애 규범성, 소외된 고용노동에 기반한 포드주의적 사회계약은 특정한 생애경로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규범적 모델을 기준으로 적극적인 포섭과 배제를 행해왔다. 마지막으로 포드주의적 사회계약 체제에서는 계약의 관리자로서 국가에 과도한 힘이 부여된다(Donzelot 2014). 국가는 계급투쟁을 조절하고 경제성장 및 위기를 관리할 뿐 아니라 내부 주체들을 개별화된 국민으로 형성해내는 일련의 재생산 과정을 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기구의 행정적·관료제적 팽창이 전면화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70년대 이래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서 이러한 포드주의적 사회계약 모델은 한계에 봉착하고,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던 요소들은 좌·우파 모두에게 비판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먼저 노동의 경우, 우파 측에서 조직 노동에 대한 탄압 및 유연화, 그리고 ‘제3의 물결’부터 근래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탈노동 담론이 제기되었다면, 좌파 사회운동에서는 고용노동의 소외적·억압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노동거부’의 전략을 통한 도전이 이루어졌다(Negri 1996). 가족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논점들이 존재하지만(Cooper 2018 참고), 일반적으로 우파가 포드주의적 가족임금을 해체하고 기업가적 개인과 유연한 가족 모델을 생산하는데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회운동 쪽에서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및 ‘정상가족’이 가진 가부장성·이성에 규범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Weeks 2016). 사회보험 제도의 경우, 우파 담론들에서 국가의 과중한 재정 부담과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다면, 좌파 진영에서는 사회보험이 가정하는 규범성과 선별성, 국가 관료제의 비민주적 확장에 초점을 맞춘 저항들이 등장하게 된다(Donzelot 2014). 이러한 포드주의적 사회계약에 대한 좌우파 양쪽의 비판은 전후 서구 복지국가가 약화 및 재구성되면서 노동과 가족의 유연화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해 가는데 일조하게 된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전후 포드주의적 사회계약의 배치 중 정상가족, 고용노동, 사회보험의 세 축이 붕괴하고 이를 대체하는 신자유주의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론 내부의 정치적 입장차에 관계없이 하나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가장 널리 인용되는 기본소득의 정의 중 하나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기본소득 정

의—“자산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축의 변형에 대한 좌·우파 기본소득론 내부의 합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정의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의 세 가지 중요 원칙들 중에서, ‘무조건성’은 조직된 고용노동의 약화 혹은 붕괴라는 현실인식, ‘개별성’은 가족임금에 대한 비판, ‘현금이전’의 원칙은 사회보험이 야기한 비효율성과 억압성에 대한 문 제제기와 연결시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소유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와 공유부 기본소득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조건’이라 부를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포드주의적 사회계약의 한 요소이자 이 체제가 보호하고자 했던 최종적 원리로서 사적 소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소득론 내부의 합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파 기본소득론은 기본소득과 소유 문제를 최대한 분리시키면서 기존 복지예산의 전환이나 재정적 조정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논한다면, “물질적 생존이라는 인권”의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논하는 공화주의적 관점이나(Raventos 2016), “실질적 자유” 개념에 의지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접근은 사적 소유 문제를 사실상 우회한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8). 반면에 좌파적 기본소득론의 일부는 기본소득의 원칙 중 하나로 공유와 공유부 배당의 문제의식을 제기하는가 하면(Negri & Hardt 2014; 금민 2020), 일부 기본자산론은 사적 소유의 제한과 공동 소유의 강화를 그 핵심 원리이자 목표로 제시하기도 한다(김종철 2020).

소유 문제를 둘러싼 기본소득론 내의 이러한

입장 차가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와 그 효과로 창출될 사회적 형태가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적 조건을 수용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 자체는 반대론자들의 우려처럼 시장과 자본의 유토피아로 귀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Van Parijs 2020의 논의들 참고). 기존의 포드주의적 사회계약이 계급타협에 기반해 가족임금과 사회보험의 형태로 재생산에 대한 자본의 직접적 기여를 일정정도 강제한다면, 기본소득은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력을 포함한 각종 재생산 비용을 한층 더 국가로 이전하고 노동소득 감소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을 보충하는 동시에, 유연한 노동체제의 적극적 도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일 수 있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실리콘 밸리의 기업가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즉, 기본소득 도입이 신자유주의 유토피아로 이어질지, 아니면 대안 사회의 토대가 될지의 여부는 소유문제라는 마지막 항을 다루는 방식에 달려있다. 소유문제를 이질적인 기본소득론들의 정치적 성격을 규정하고 그 사회운동적·대안적 지향성을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정관에 수록된 기본소득의 정의에 공유부(common wealth)의 문제의식을 포함시킨 것(“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이나 경기도 정부가 최근 ‘데이터 배당’을 실시한 것은 물론, 최근 기본소득 관련 논의들에서 자유와 평등보다는 “공유지(common)에 대한 평등한 공유권”에서 기본소득의 근거를 찾거나(권정임·곽노완·강남훈 2020)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분배정의의 실현 문제로 접근하는(금민 2020), 소위 ‘공유부 기본소득’의 문제의식

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론의 흐름에서 눈여겨볼 전환이며 이후 심화된 논쟁으로 이어져야 할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이 자각하고 있듯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 자체가 공유부의 문제의식과 직접적·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금민 2020: 99-100). 즉,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소득의 형태로 분배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소득이 꼭 공유부 배당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사적 소유 비판 및 공유의 문제의식과 만나는 지점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상당수 남아있다. 그 중 기본소득과 소유문제의 연결고리를 심화하고 확장하는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지점만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기본소득이 제기하는 공유부의 문제의식과 기본소득의 형태적 원리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긴장 관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적 조건들—노동 유연화와 화폐 및 시장에 대한 의존,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을 일정정도 수용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들 원리와 정치적 지향점이 공유부라는 문제의식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혹시 둘 간에 긴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유부의 문제의식을 중심에 놓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형태적 원리들을 무리하게 고수하기보다는, 비화폐적 형태의 기본소득에 대한 모색, 소유 및 공유의 주체를 개인을 넘어 집단과 공동체로 다변화하는 기획, 그리고 협동조합과 같이 노동에 기반한 공유와 분배 형태 등에 대한 고민을 기본소득의 문제의식과 연결시킴으로써, 고민의 지평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공유부 기본소득론은 토지·환

경·빅데이터와 같은 몇 가지 특별한 사례들로 공유부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유부를 사적 소유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예컨대, 금민 2020). 그러나 공유부와 소유권에 대한 다양한 인류학·사회학 연구들이 보여주듯, 공유와 사적 소유의 경계는 문화적·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권 역시 사용권, 접근권, 처분권과 같은 여러 권리의 다발bundle로 구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다(Verdery & Humphrey 2004; Widlok 2016; 최현 외 2019). 따라서 공유부의 범위와 성격을 미리 주어진 것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공유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넓혀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사적 소유권의 복합적·배타적 성격을 해체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통해 공유부 기본소득론의 문제의식은 지적재산권 비판과 반엔클로저 공유화commoning,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부를 수탈하고 사유화하는 도구”(Negri & Hardt 2014: 215)인 금융영역의 통제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기본소득과 공유의 이중전략?

역사적 관점에서 토마스 페인 등에 의해 기본소득 혹은 기본자산의 문제의식이 최초로 제기되었던 18세기 말-19세기 초와 현재는 한 가지 유사점을 가진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이중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의 보편화라는 ‘자유주의적 조건’이 아직 충분히 자리잡지 않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소농사회와 장인노동이 무너지던 산업자본주의의 태동기소유문제를 다시 사고해 보자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제안은, 자유로운 임노동이 보편화되어 사회적 부의 주된 분배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회화/국유화라는 사회주의 운

동의 과제로 통합되었다. ‘자유주의적 조건’을 수용한 노동계급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본인들의 몫(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대체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이러한 임노동의 조건 자체를 지양해나가는 일종의 이중 전략이 구사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앞서 이야기한 ‘신자유주의적 조건’ 속에서 이러한 이중 전략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Feher 2018). 포스트-산업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노동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된 것일지 모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고용노동이 비중있고 안정된 분배의 토대이자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Ferguson 2017). 임노동의 보편성이 희석되고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적 조건’ 속에서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들의 물질적 생존과 최소한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일차적 방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조건을 수용한 프레카리아트들이 자신의 조건을 지양하는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Wright 2020)? 오늘날 소유/공유 문제가 기본소득론 내부의 핵심적 쟁점이자 새로운 대안의 장소로 귀환하고 있다면, 바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일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임·곽노완·강남훈 (2020).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진인진.
-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
- 김종철 (2020). 『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개마고원.
- 최현 외 (2019). 『공동자원의 영역들』. 진인진.
- Cooper, M. (2018). Family Values. Zone Books.
- David, H. (1994). 구동화·박영민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 Donzelot, J. (2014). 이승철 외 역. 『사회의 동원』. 『푸코효과』. 난장.
- Ewald, F. (2020). The Birth of Solidarity. Duke University Press.
- Feher, M. (2018). Rated Agency. Zone Books.
- Ferguson, J. (2017). 조문영 역. 『분배정치의 시대』. 여문책.
- Fraser, N. (2014). 홍기빈 역. 『삼중운동?』. 『뉴레프트리뷰』 vol. 5.
- Offe, C. (1982)“ Some Contradictions of the Modern Welfare State.” Critical Social Policy 2(2).
- Negri, A. & Hardt, M. (1996). 이원영 역. 『디오니소스의 노동』. 갈무리.
- Negri, A. & Hardt, M. (2014). 장남영·윤영광 역. 『공동체』. 사월의 책.
- Pateman, C. (1989). The Disorder of Women. Polity Press.
- Raventós, D. (2016). 이한주·이재명 역.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책담.
- Van Parijs ed. (2018). 안효상 역. 『기본소득과 좌파』. 박종철출판사.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8). 홍기빈 역. 『21세기 기본소득』. 흐름출판.
- Verdery, K. & Humphrey, C. eds. (2004). Property in Question. Berg.
- Weeks, K. (2016). 제현주 역.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동녘.
- Widlock, T. (2016). Anthropology and the Economy of Sharing. Routledge.
- Wright, E.O. (2020). 유강은 역.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 이매진.